[서식 예] 양수금 등 청구의 소(대위인도청구소송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4. 위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김◇◇이 대하여 금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금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있 어 20○○. ○. ○. 피고 김◇◇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채권 금 ○○○○원 중 금 ○○○원을 양도하였고, 20○○. ○. ○.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 2. 그런데 피고 김◇◇는 피고 이◇◇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20○○. ○. ○. ♣ 참보증금 ○○○○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임차하였고, 20○○. ○○.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는데, 위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이후로 다수의 채권가압류가 되었고, 피고 이◇◇는 피고 김◇◇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김◇◇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인도의무이행을 촉구하지 않고있습니다.
-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이◇◇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김◇◇에 대하여 피고 김◇◇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이◇◇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양수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사실통지서
1.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000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m² 끝.

관합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첫 시
비용 ·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체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체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수 없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체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수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됩(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지명체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비 용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 복 절 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재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수 없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수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수 없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및 기 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수 없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할수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및 기 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체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수 없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수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관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수 없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수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수 없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수 없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 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 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자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여기서
기 타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
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
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채무자가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
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
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
에 별도의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4.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